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55
----------	-------

발의연월일 : 2025. 12. 18.

발 의 자 : 이원택 · 이언주 · 송옥주
김한규 · 윤후덕 · 문대림
주철현 · 임미애 · 최혁진
서삼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 및 정주여건 제고를 위하여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각 지자체 및 특구를 중심으로 촉진되고 있는 상황임. 새만금 사업지역도 이에 발맞춰 ‘균형성장 거점으로서의 새만금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준비하고 있음.

그러나, 새만금 사업지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필요한 ‘추천권자’에 대한 내용과 일부 용어의 정의가 부재하고, 타 법령의 준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집행 등을 수행하는 ‘새만금개발청장’을 외국학교법인의 추천권자로 규정하고, ‘외국학교법인’과 ‘외국교육기관’의 정의를 반영함과 동시에 일부 준용대상을 명확히 하여 국민과 법집행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0호 신설, 제61조

제1항 및 제4항 개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제61조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 내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학교법인”을 “외국학교법인(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다음”을 “새만금청장의 추천을 받은 후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운영에 필요한”을 “운영, 지원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9. (현행과 같음) 10.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u>제61조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 내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u>
제61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① <u>외국학교법인</u> 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u>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승인을 받아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u> 1. · 2. (생략) ②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학교법인의 자격,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조건 및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u>운영에 필요한</u> 사항은 「경	제61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① <u>외국학교법인(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 새만금청장의 추천을 받은 후 다음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u>운영, 지원에 따른 조치 등</u>

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 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⑤ ~ ⑨ (생략)	<u>에 필요한</u> ----- ----- -----. ⑤ ~ ⑨ (현행과 같음)
--	---